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강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1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최강욱・박성준・양정숙

김회재 · 강민정 · 윤재갑

김주영 · 오영환 · 문진석

김종민 • 이성만 • 류호정

민형배 • 이규민 • 서영석

김승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,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송 하는 독촉장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 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전자문서는 우편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,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송달할 수 있으며,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,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.

또한, 보험료 납부 시 편의를 중시하여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보험료 납입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그 밖의 안내문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.

이에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도

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,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 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제2항제1호, 제79조제2항·제3항, 제81조의4 및 제81조의5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2항제1호 중 "제79조제2항에"를 "제81조의4제1항에"로 한다.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81조의4를 제81조의5로 하고,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1조의5(종전의 제81조의4) 본문 중 "관하여는"을 "관하여 제81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"으로 한다.

제81조의4(전자문서 고지 등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 또는 해당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(이하 "납부의무자등"이라 한다)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, 독촉 또는 송달(이하 "전자문서 고지등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등에 대한 신청 방법・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1.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
- 2.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독촉
- 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송달
- 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

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전자문서 고지등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 고지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등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등이 그 납부의무자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문서 고지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부터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고 있는 납부 의무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81조의4제2항 단서의 개 정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등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보험료의 경감 등) ① (생	제75조(보험료의 경감 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	②
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	
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.	
1.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	1. <u>제81조의4제1항에</u>
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	
받는 경우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9조(보험료등의 납입 고지) ①	제79조(보험료등의 납입 고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	<u><삭 제></u>
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	
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	
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	
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	
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・절차	
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	
부령으로 정한다.	

③ 공단이 제2항에 따라 전자 | <삭 제>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전 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가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④ ~ ⑥ (생 략) <신 설>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1조의4(전자문서 고지 등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 또는 해당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(이하 "납부의무자등"이라 한 다)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 서로 고지, 독촉 또는 송달(이 하 "전자문서 고지등"이라 한 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 자문서 고지등에 대한 신청 방 법 ·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.

1.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

- 2.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독촉
- 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의 송달
- 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 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 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 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전자문서 고지등을 신 청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 고지등을 하지 아니 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 문서 고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 나 납부의무자등이 지정한 전 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 입 고지 등이 그 납부의무자등 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같은 조 제2항 단서는 <u>사항 이외에는</u>-----

제81조의4(서류의 송달) 제79조 제81조의5(서류의 송달) ------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 에 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--관하여 제81조의4에서 정하는

제외한다)부터 제12조까지의	
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우편송	
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른다.	